

[별표 6] <개정 2011.4.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지연기간에는 다음의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람계획 통지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88조제2항제1호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총회의결을 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50만원
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총회의결을 한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100만원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총회		150만원

의결을 한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4)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총회의결을 한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나. 법 제49조제4항 및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통지를 태만히 한 경우 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8조제2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다.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8조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라. 법 제8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경우 1) 시·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2) 시·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3) 시·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4) 시·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인계하지 않은	법 제88조제2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경우		
----	--	--